

제222회 영등포구의회
2020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6. 19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31호로 2020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“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안건 번호	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계			90,000
231	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	창의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	90,000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

5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1)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- 출연기관인 **영등포문화재단**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,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, 청소년시설 운영관리와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, 문화예술 진흥,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, 수익을 창출 하는 데에는,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바,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검토결과,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.
- 다만, 위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1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- 제20조(재정 지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
2. 영등포구민회관 및 대림,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 운영 관리
3.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
4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조사·연구
5. 문화예술의 국내·외 교류사업
6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②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4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① 구청장은 창의·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(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) 및 체험 사업
2. 예(禮), 효(孝), 정직, 책임, 존중, 배려, 소통,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
3. 생명안전 체험 사업
 4. 학생의 진로 탐색·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
 5.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 6. 그 밖에 창의·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·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, 정산,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